

전 주 지 방 법 원

담 보 제 공 명 령

사 건 2020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
전주시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채 무 자 유한회사
전주시
대표이사

제 3 채 무 자 주식회사
전주시
대표이사

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,000,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.
다만,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8,000,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2020. 10. .

판 사

1. 진술최고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 시까지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,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보관금(진술최고비용)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에서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전 주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20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()

전주시
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

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채 무 자 유한회사 ()

전주시

대표이사

제 3 채 무 자 주식회사 -은행 ()

대표이사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공탁하고 신청할 수 있다.

청구채권의 내용 2020.03 . 계약

청구금액 금 25,000,000 원

이 유

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주식
회사 증권번호 제 :)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,000,000원
을 공탁(2020.10. , 전주지법공탁관, 2020금 '호)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10. .

판 사



- ※ 1.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.
- 2.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